



## 인도네시아 Tax Alert 2022 년 1 월호

### 자진 신고 프로그램에 대한 시행령

2021 년 12 월 22 일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MoF)은 세법개정(Undang-undang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 (UU HPP))에 관한 법률 No. 7 을 통해 도입된 자진 신고 프로그램의 (Program Pengungkapan Sukarela) (VDP) 시행령으로 규정 No. 196/PMK.03/2021 을 공표했음. ( 자세한 내용은 [Tax Info October 2021](#) 및 [Tax Alert November 2021](#) 참조).

PMK-196 은 VDP 신청 절차, 투자 절차, 신고 요건, 제재, VDP 프로그램에 따라 공개된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를 포함하여 두 가지 VDP 계획의(VDP I 및 VDP II) 시행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022 년 1 월 1 일부터 6 월 30 일 사이에 제출해야 합니다.

## VDP 세부 내용

납세자의 유형에 따라 두 가지 VDP 가 있습니다.

### VDP I

VDP I 은 이전의 조세사면(TA)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1985 년 1 월 1 일부터 2015 년 12 월 31 일 사이에 취득한 자산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으며 국세청(DGT)이 해당 자산에 대한 정보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임.

VDP I 에 따라 적용되는 최종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이 인도네시아에 있거나 외부에 있지만 인도네시아로 송환되어 특정 투자 상품에 투자되는 경우 6%
- 자산이 인도네시아에 있거나 외부에 있으며 인도네시아로 송환되지만 특정 투자 상품에 투자되지 않는 경우 8%
- 자산이 인도네시아 외부에 있으며 인도네시아로 송환되지 않는 경우 11%

최종 분리과세에 사용되는 자산 및 부채 가치는 2015 회계연도 말의 가치와 조건에 따라 결정됨. 허용 가능한 부채는 개인 납세자 경우 자산 가치의 50%이고 법인 납세자 경우 자산 가치의 75%로 제한됨. 자산 또는 부채가 인도네시아 루피아(IDR) 이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그 가치는 재무부 장관이 결정한 FY2015 말일 환율을 사용하여 IDR 로 환산함.

### VDP II

VDP II 는 2016 년 1 월 1 일부터 2020 년 12 월 31 일 사이에 취득한 순 자산 중 2020 년 연간 개인소득세 신고서(ITR)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납세자를 위해 규정되었음.

VDP II 에 따라 적용되는 최종 세율은 아래와 같음:

- 자산이 인도네시아에 있거나 외부에 있지만 인도네시아로 송환되어 특정 투자 상품에 투자되는 경우 12%
- 자산이 인도네시아에 있거나 외부에 있으며 인도네시아로 송환되지만 특정 투자 상품에 투자되지 않는 경우 14%; 또한
- 자산이 인도네시아 외부에 있으며 인도네시아로 송환되지 않는 경우 18%

최종 분리과세에 사용되는 자산 및 부채의 가치는 액면 가치(현금 및 현금성 자산) 또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함. 자산의 취득원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납세자는 2020 년 12 월 31 일에 자산의 시장 가치를 취득 원가로 함. 자산 또는 부채가 IDR 이 아닌 다른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그 가치는 MoF 결정서 No. 56/KM.10/2020 에 따라 결정된 2020 년 12 월 31 일자 환율을 사용하여 IDR 로 환산 함.

PMK-196 provides the details and administration procedures on the available VDP schemes.

VDP II 에 참여하는 개인 납세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납세자는 2016 회계연도부터 2020 회계연도까지 세무조사 또는 조세위반 예비조사를 받고 있지 않으며 조세범죄로 인한 조사 또는 사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지 않으며 또한 조세 범죄로 형을 선고 받지 않음;
- 납세자는 납세자 번호(Nomor Pokok Wajib Pajak)가 있어야 하며 VDP II 에 대한 최종분리과세를 정산하고 2020 년도 개인소득세 신고서 제출 및 2016 년도 ~ 2020 년도 과세기간중 진행중인 조세소송이 있다면 이를 취소해야 함;
- VDP II 에 참여하는 개인 납세자가 2021 년 10 월 29 일 이후 제출한 2016~2020 년도 대상 개인소득세 수정신고가 있다면 이는 무시됨; 또한
- 납세자가 2021 년 10 월 29 일까지 2020 년도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그 전년도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된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정보는 2020 년도에 새로 취득한 자산 및 부채를 추가하여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함. 그 전년도 소득세 신고서에 신고되지 않은 자산과 부채는 VDP II 에 의거 신고함.

## VDP 신청

VDP 에 참여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2022 년 1 월 1 일에서 6 월 31 일 사이에 DGT 웹사이트를 통해 자산 공개 신고서를 (Surat Pemberitahuan Pengungkapan Harta (SPPH)) 필수 증빙 서류와 함께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함. 과세 당국은 SPPH 제출에 대한 응답으로 근무일 기준 1 일 이내에 명세서를 전자적으로 발행합니다.

2022 년 1 월 1 일에서 6 월 30 일 사이에 다음과 같은 경우 납세자는 두 번째, 세 번째 또는 후속 SPPH 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전에 제출한 SPPH 에 오류가 있음;
- 공개할 추가 순자산이 있음;
- 납세자는 이전 SPPH 에서 신고된 순 자산을 철회하기를 원함; 또는
- 이전에 제출된 잘못된 SPPH 공개를 초래하는 또 다른 조건이 발생함

두 번째, 세 번째 또는 후속 SPPH 이후에 DGT 가 발행한 명세서는 이전 명세서를 대체 함.

납세자는 2022 년 1 월 1 일에서 6 월 30 일 사이 VDP 참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후 납세자는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처리됨. 이럴 경우 VDP 의 모든 권한은 취소되며 납세자는 더 이상 VDP 에 참여할 수 없음. DGT 는 VDP 취소가 결정된 납세자의 조세분쟁 관련 절차를 지속 진행할 수 있음.

과세 당국은 명세서가 잘못 작성되었거나 명세서에 계산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음. 과세 당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 명세서를 취소할 수 있음: (i) 신고서가 실제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ii) 납세자 및/또는 공개된 순자산이 VDP 에 적격하지 않음.

Taxpayers must submit the SPPHs or the subsequent SPPHs or cancel their participation in the VDP between 1 January and 30 June 2022.

VDP 를 통해 신고된 미공개 자산에 대한 미지급 세금은 SPPH 제출 전에 납부해야 함. 한편, VDP 를 통해 과납한 세금은 환급되거나 다른 조세 채무에 대해 공제될 수 있음.

## VDP 투자 절차

납세자는 은행을 통해 2022 년 9 월 30 일까지 역외 순자산을 인도네시아로 송환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함. SPPH 에 신고된 자산 중 이미 인도네시아에 있거나 인도네시아로 송환되는 역외 자산은 신고서 날짜로부터 최소 5 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보유해야 함.

적격 프로젝트 또는 상품에 투자할 의사가 있음을 신고한 납세자는 2023 년 9 월 30 일까지 투자를 이행해야 함. 적격 투자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천연 자원 처리 및 재생 에너지 부문, 신규 회사 설립 또는 기업 공개 또는 신주발행의 일환으로 회사에 자본 투입. 적격 부문은 재무부가 추가로 결정함; 및
- 국채(예: 국채 및 정부/국가 샤리아 증권)는 사모 방식을 사용하여 1 차 시장의 1 차 딜러(MoF 가 지정한 은행 또는 증권 회사)로부터 구매함.

납세자는 초기 투자를 2 년간 유지 후 다른 적격 투자로 2 회 전환할 수 있음. (또는 특정 경우 2025 년 9 월 30 일 이후). 해당 전환은 1 년에 1 회 가능 함. 이전 투자 철회와 새로운 투자 참여 사이의 "유휴" 기간은 투자 보유 기간에서 제외됨. 유휴 기간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이는 5 년의 최소 투자 보유 기간은 투자가 완료된 날로부터 7 년내에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임. (또는 특정 경우 2023 년 9 월 30 일부터 7 년).

## 신고 요건

역외에서 인도네시아로 순자산을 송환할 의사를 신고하고 적격한 투자 프로젝트 또는 상품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납세자는 필수 투자 보유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DGT 에 전자적으로 연간 송환 및/또는 투자 실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투자 실현 신고서에 신고되는 자산과 부채는 제출된 연도 이전의 회계 연도 말에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함.

첫번째 연도의 실현 신고서 제출 마감일은 FY 2022 소득세 신고서 제출 마감일이며 두 번째 연도 및 후속 연도 신고서는 FY 2023 및 후속 소득세 신고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함.

## 제재

VDP I 에 참여하면 DGT 가 사전에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자산을 발견했다면 부과되었을 TA 법에 따른 세금 및 제재가 면제됩니다.

Taxpayers committing to repatriate their offshore net assets into Indonesia must carry out such repatriation by 30 September 2022.

Taxpayers declaring their intention to invest in eligible projects or instruments must make the investments by 30 September 2023.

VDP II 의 경우 DGT 는 프로그램을 통해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추가 자산이 있다는 정보를 얻지 않는 한 FY 2016 에서 FY 2020 에 대한 세액 확정 통지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추가 자산은 FY 2022 에 대한 소득으로 처리되며 최대 24 개월 동안 재무부 장관이 매월 발행하는 기준 세율에 따라 최종 소득세 30% 및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VDP 에 참여하지만 자산 송환 및/또는 투자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납세자의 경우 순자산은 FY 2022 의 소득으로 처리되며 특정 상황에 따라 3%에서 6% (VDP I) 및 3%에서 7% (VDP II) 범위의 세율로 (추가) 최종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과세 당국이 VDP 준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고 서한(surat teguran)을 발행하고 납세자가 경고 서한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과세 당국은 납세자를 세무조사하고 과소납부 세액 확정 통지서(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 (SKPKB))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SKPKB 발행으로 인한 (추가) 최종 소득세율은 4.5% ~ 7.5%(VDP I) 및 4.5% ~ 8.5%(VDP II)입니다. SKPKB 발행시한은 투자보유기간 종료 후 1 년입니다.

VDP II 에 참여하는 납세자는 FY 2016 에서 FY 2020 에 대한 조세분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VDP 혜택이 취소됨.

## VDP 에 공개된 자산 및 부채의 기장

장부를 유지해야 하는 VDP 참가자는 SPPH 에 공개된 순 자산을 이익 잉여금의 추가 항목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SPPH 에 공개된 자산 및 부채는 2022 회계연도에 대한 소득세 신고서의 신고서 날짜에 새로 취득한 자산 및 부채로 처리해야 합니다. 공개 자산은 세무 목적상 감가상각 또는 상각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사항

DGT 는 SPPH 에 포함된 데이터 및 정보를 조세범죄 조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비조세 관련 범죄 조사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은 데이터/정보를 입수한 경우 해당 데이터/정보를 조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VDP 와 관련한 모든 조세분쟁은 조세법원에 소송(gugatan)을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SKPKB 발행과 관련된 분쟁은 일반 조세소송 절차를 따릅니다.

\*\*\*\*\*

The DGT is unable to use the data and information contained in an SPPH as the basis for carrying out tax crime investigation.

## Contact Persons

Questions concerning any of the subjects or issues contained in this newsletter should be directed to your usual contact in our firm, or any of the following individuals:

### Business Tax

**Melisa Himawan**  
**Tax & Legal Leader**  
mehimawan@deloitte.com

### Business Tax, M&A and Tax

**Management Consulting**  
**John Lauwrenz**  
jlauwrenz@deloitte.com

### Transfer Pricing

**Roy David Kiantiong**  
rkiantiong@deloitte.com

### Business Tax and International Tax

**Cindy Sukiman**  
csukiman@deloitte.com

### Business Tax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Ratna Lie**  
ratnalie@deloitte.com

### Transfer Pricing

**Balim**  
bbalim@deloitte.com

### Business Tax

**Dionisius Damijanto**  
ddamijanto@deloitte.com

### Business Tax, Business Process Solutions and Gi3

**Roy Sidharta Tedja**  
roytedja@deloitte.com

### Transfer Pricing

**Shivaji Das**  
shivdas@deloitte.com

### Business Tax

**Heru Supriyanto**  
hsupriyanto@deloitte.com

### Business Tax, Indirect Tax and Global Trade Advisory (Customs)

**Turmanto**  
tturmanto@deloitte.com

### Transfer Pricing

**Sandra Suhenda**  
ssuhenda@deloitte.com

### Business Tax

**Reggy Widodo**  
rwidodo@deloitte.com

### Global Employer Services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Irene Atmawijaya**  
iatmawijaya@deloitte.com

### Global Employer Services

**Sri Juliarti Hariani**  
shariani@deloitte.com

### Deloitte Touche Solutions

The Plaza Office Tower, 32nd Floor  
Jl. M.H. Thamrin Kav 28-30  
Jakarta 10350, Indonesia  
Tel: +62 21 5081 8000  
Fax: +62 21 2992 8303  
Email: [iddttl@deloitte.com](mailto:iddttl@deloitte.com)  
[www.deloitte.com/id](http://www.deloitte.com/id)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 About Deloitte Indonesia

In Indonesia,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Touche Solution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